

## ◎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-39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4월 20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###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
#### 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#### 2. 행정처분대상 : 주식회사 비\*\*앗이

#### 3. 게재(게시)기간 : 2023. 4. 20.~ 5. 3.(14일)

#### 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(☎ 02 - 6735 - 8131/ FAX 02-6020-8461 / E-mail :lshdash@korea.kr

#### 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| 번호 | 대상자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/<br>법인등록번호 | 고지주소         | 법령<br>위반사항   | 과태료<br>금액(원) | 스팸URL<br>전화번호 | 광고<br>내용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 | 주식회사<br>비**앗이 | 110111-<br>7***** | 서울특별시<br>노원구 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<br>및 정보보호 등에<br>관한 법률 제50조<br>제1항, 제4항, 제6항 | 7,500,000    | 1522-****     | 포인트<br>보상<br>이벤트 |